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4 발의연월일: 2020. 7. 22.

발 의 자:기동민・인재근・김회재

이상민 · 이정문 · 김영배

박용진 · 김원이 · 황운하

강훈식・조오섭・정춘숙

도종환 · 양정숙 · 한준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 거를 신설함으로써,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장해급여 등 이 법 에 따른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52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 번호 제22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2항 전단 중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"을 "요양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서류의 제출요구권 등) ①	제52조(서류의 제출요구권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	2
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	
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	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	
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	<u>요양기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	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<u>기관</u> 에 「군인연금법」 제27조	<u>는 단체나 기관</u>
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	
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	
에 필요한 주민등록·가족관계	
등록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	
강보험·장애인등록 등 대통령	
렁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	
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	,
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	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	
에 따라야 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